##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정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

발의연월일: 2024. 5. 30.

발 의 자: 황정아 · 박범계 · 조승래

장철민 • 박정현 • 장종태

박용갑 • 차지호 • 박지혜

백승아 · 김남근 · 윤종군

박균택 · 김기표 · 김용만

의원(15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과학기술기본법」에서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과정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리고,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하고 있음.

하지만 2024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정치적 논리에 따라 R&D 예산이 삭감되며, 사실상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가 형해화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변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는 경우 그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

이 국회에 보고하고,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며,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R&D 예산 편성에 충실히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의2제9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제8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변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, 공청회를 개최한 후 재조정을 위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의2(국가연구개발사업 예	제12조의2(국가연구개발사업 예
산의 배분·조정 등) ① ~ ⑧	산의 배분·조정 등) ① ~ ⑧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⑨ 제8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
	관이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
	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변경하
	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
	재조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
	관은 그 내역과 사유를 지체
	없이 국회에 보고하고, 공청회
	를 개최한 후 재조정을 위한
	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